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7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, 공직생활의 만족도와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함
-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휴가 사용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휴가 휴가일수 확대(안 제21조제9항)
- 나.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에 관한 내용 개정(안 제21조제9항)
 - 기존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별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 삭제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기간: 2026. 5. 15.~2026. 6. 4.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: 별첨(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확대 요구)

8. 부서협의 결과: 의견 없음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9항 전단 중 “5일(2회분할)” 을 “7일” 로, “10일(3회분할)” 을 “15일” 로, “20일(5회분할),” 을 “25일,” 로, “20일(5회분할)의” 를 “25일의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서명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자치행정과장 정 주 연
	팀장 직위 · 성명	총무팀장 김 효 진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이 나 연 (031-790-518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근검 · 절약)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</u>	<u><삭 제></u>
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 ⑨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 <u>5일(2회분할)</u>,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<u>10일(3회분할)</u>,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경우 <u>20일(5회분할)</u>, 30년 이상 재직한 경우 <u>20일(5회분할)</u>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을 따른다. ⑩ ~ ⑪ (생략)	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----- ----- <u>7일</u>----- ----- <u>15일</u>----- ----- --- <u>25일</u>, ----- ----- <u>25일의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⑩ ~ ⑪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[시행 2025. 7. 22.] [대통령령 제35666호, 2025. 7. 22., 일부개정]

제7조의7(특별휴가)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바에 따른다.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 결과

□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

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개인	○ 30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-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, 장기재직휴가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-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25일로 조정 필요	○ 반영 - 장기재직휴가의 제도 취지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제안 의견 타당하다고 판단됨. - 이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25일로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